

구미시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 .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구미시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는 「하천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수익자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1999. 2. 8. 「하천법」 전부개정에서 ‘수익자부담금’ 조항이 삭제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구미시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의 폐지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하천법」 제5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장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구미시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하천법」

제58조 (수익자부담금)

- ① 관리청은 하천공사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이익을 받는 범위안에서 당해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부담시킬 수 없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액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81.3.31, 1997.12.13>

※ 1999. 2. 8. 전부개정에서 조문 삭제

소관 실·과		건설수변과
입 안 자	과 장	강 창 조
	담 당	김 석 연
	담 당 자	박 진 희 (480-5353)